

행복한 도민
신뢰받는 의회

제342회 임시회
2015. 9. 11.(금)

심 사 보 고 서

○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

충청북도의회
건설소방위원회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
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221
----------	-----

2015. 9. 11.(금)
건설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김봉희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15년 8월 24일

다. 회부일자 : 2015년 8월 25일

라. 상정일자 : 2015년 9월 7일

(제342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)

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 설명자 : 김봉희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2015년 7월 1일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가 개정됨에 따라 재난안전실이 신설되고, 이에 따른 직위 및 명칭이 변경되어 조례 일부를 개정하려는 것임.

나. 주요내용

- ‘안전총괄업무과장’ → ‘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’으로 변경
(안 제12조)
- 기타 조문 정비 등(안 제1조, 제3조제2항, 제4조, 제8조제2항)

3. 검토보고 요지

(건설소방수석전문위원 : 김학두)

가. 조례개정의 필요성

-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 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16조에 따라 시·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할 수 있으며,
- 「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」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는 사항은 없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조문의 표현은 조문상호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으며, ‘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’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라. 검토의견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검토한 바, 재난안전실 신설에 따라 소관부서 조례의 직위

명칭 등을 변경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, 본 조례의 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없 음”

5. 토 론 요 지 : “없 음”

6. 심 사 결 과 : 원안가결

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 음”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 음”

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충청북도 조례 제 호

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」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”으로 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중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」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3항 중 “위원중에서”를 “위원 중에서”로 한다.

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“하나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료전이 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해촉”을 “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 라도 도지사가 위원을 위촉 해제”로, “위원 ”를 “위원”으로 한다.

제8조제2항 중 “없는 한”을 “없을 때에는”으로 한다.

제12조 중 “안전총괄업무과장”을 “재난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과장”으로 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</u>」 제75조에 따라 충청북도 안전관리자문단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3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도지사가 위촉한다.</p> <p>1.·2. (생략)</p> <p>3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</u>」 제40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 관리전문기관 소속의 전문가</p> <p>4. (생략)</p> <p>③ 단장과 부단장은 <u>위원중에서</u> 위원들이 호선한다.</p> <p>제4조(임기) 단장, 부단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<u>하나</u>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<u>료전이라도</u> 도지사가 <u>위원을</u> 해촉할 수 있으며, <u>위원</u> 이 <u>궐위된</u> 후임 <u>위원</u> 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</u>」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제3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----- -----.</p> <p>1.·2. (현행과 같음)</p> <p>3. 「<u>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</u>」 ----- -----</p> <p>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-----<u>위원 중에서</u> -----.</p> <p>제4조(임기) ----- ----- -----. <u>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 료 전이라도</u> 도지사가 <u>위원을 위촉</u> <u>해제</u> -----<u>위원</u> ----- -----<u>위원</u> ----- -----.</p>

1. ~ 3. (생략)

제8조(의견청취) ① (생략)

② 제1항에 따라 요구를 받은 관계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문단의 요구에 응하여야 한다.

제12조(간사와 서기) 자문단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 각 1명을 두되, 간사는 안전총괄 업무과장이 되고 서기는 안전점검 업무담당사무관이 된다.

1. ~ 3. (현행과 같음)

제8조(의견청취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
-----없을 때에는
-----.

제12조(간사와 서기) -----

-----재난관리 업무를
담당하는 과장 -----
-----.